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43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0.

발 의 자 : 전용기 · 조계원 · 정준호
복기왕 · 이연희 · 박상혁
김원이 · 강준현 · 이건태
양문석 · 김남희 · 송옥주
박 정 · 박해철 · 윤종균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이름에 사용되는 ‘문자’만을 규제할 뿐, 그 ‘의미’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. 그래서 부모가 욕설, 비속어 등 성명어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이름을 자녀의 성명으로 기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실정임.

특히 성장 과정에서 이름을 매개로 한 놀림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, 아동의 인격 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음.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미 미국, 독일,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는 부적절한 이름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.

이에 출생신고 시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담당관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는 한편 불필요한 개명 절차에 소요되는 사법

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44조 및 제44조의2).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”을 “제4항에 따라 사회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문구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5항”으로 한다.

- ④ 신고서에 기재된 자녀의 이름에 욕설·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문구가 포함된 경우 시·읍·면의 장은 신고서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44조의2제1항 중 “제44조제4항”을 “제44조제5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4조(출생신고의 기재사항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4조(출생신고의 기재사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신고서에 기재된 자녀의 이름에 욕설·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문구가 포함된 경우 시·읍·면의 장은 신고서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
④ (생략)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	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 ⑥ 제4항에 따라 사회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문구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5항----- ----- -----.
제44조의2(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) 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.	제44조의2(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) ① 제44조제5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